2022년도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2. 2. 28.(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이성엽, 송수현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35건(안건번호 제2022-6967호~750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6967호~6973호(순번 1번~7번)는 ●●●●●의 채널 '◎◎ ◎◎'의 게시물로, 음악저작물 이용 부분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단체의 제휴 계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는 적법한 저작물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영상 부분의 경우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이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63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564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2-5510호~7073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6개에 접속할 수 있는 1,564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4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642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7번은 ●●●●●에 동영상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시된 음악저작물임. 민원인이 실

명으로 신고한 건으로, 총 8개 게시물임.
(순번 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채널명은 '◎◎ ◎◎'로 약 5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음. 순번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해당 채널의 게시물임.
(순번 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순번 5번은 '△△△△ △△ △△'이라는 소개와 함께 예전 노래들을 연속 재생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가수 사진을 영상 부분으로 이용하고 있음.
(순번 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순번 6번에서 제공 중인 곡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의 OST로 삽입이 되어 영상 부분을 해당 드라마를 편집해서 사용하고 있음. 기존에 있는 영상이 아니라 게시자가 마음에 드는 장면들을 임의로 편집해서 붙여넣기 한 것으로 보임.
(순번 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순번 7번의 경우는 가수 ▲▲▲의 '▽▽▽'라는 곡의 뮤직비디오 자체를 제공하고 있는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2회 반복 재생 중임. 권리자가 제공하는 공식 뮤직비디오와 동일한 영상임.
●●●●●는 ○○○에서 제공 중인 스트리밍 생방송 동영상 서비스로, 채널을 개설하여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와 유사한 성격임. 해달 채널에서 제공 중인 영상은 대부분 음악저작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영상 부분은 실연자의 사진, 방송 캡처 화면으로 대체하고 있음. 순번 1번~5번이 그와 동일한 형태임. 순번 6번의 경우 드라마 방송물의 편집 영상을, 순번 7번의 경우 공식 뮤직비디오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채널의 전반적인 성격에 비추어 보아 게시자는 음악저작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나 타인의

사진 저작물 또는 영상 저작물을 함께 이용 중인 바, 이를 나누어 검토하겠음.

음악저작물 이용부분의 경우 ●●●●●는 ◆◆◆◆◆◆◆◆◆ 및 ◇◇◇◇◇◇◇◇◇◇와 제휴를 맺고 이용자들이 해당 단체의 신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두 개의 신탁 단체의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모든 이용허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있음.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3번 및 5번~7번의 경우 ◆◆◆ 및 ◇◇◇의 신탁 중인 사실이 확인됨. 다만 순번 4번의 경우 원곡에 대해서는 ◆◆◆에 신탁되어 있으나 리메이크곡에 대해서는 신탁 정보가 없었음. 다만 ◇◇◇에 신탁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됨.

이에 따르면 순번 1번~3번 및 5번~7번은 권리자인 신탁 단체의 이용허락을 받은 플랫폼 내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음. 순번 4번의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 음악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신탁 관리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 그 중 두 개의 단체만이 ●●●●●와 제휴한 사실 및 개별 음악의 신탁 여부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이용자가 동일한 방송에서 동일한 실연자가 부른 곡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신탁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예상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에 대한 신탁 사실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플랫폼을 신뢰한 이용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에는 부절적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악저작물 이용 부분에 대하여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음으로 영상 부분에 대하여,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는 저작물 이용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이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순번 6번의 경우 편집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편집 영상은 게시일 기준 30회까지 방영된 드라마 방송물 중 게시자의 취향에 맞는 장면을 무작위로 뽑아 약 4분 분량으로 편집한 것으로 드라마의 주요 내용을 요약·편집하는 일명 '몰아보기' 영상과는 성격이 다름. 따라서 해당 편집 영상이 원저작물의 일부를 이용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원저작물을 대체하여 합법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종합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악저작물 이용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휴 계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바 권리자의 이용 허락이 있는 적법한 저작물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영상 부분의 경우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이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공 중인 '◎◎ ◎◎'는 ●●●●●에 있는 여러 채널 중 하나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의 경우 □□□와 다르게 방송사, 소속사 등 권리자사의 채널의 활동이 지배적이며, 심의대상 채널과 같이 개인이 운영 중인 채널은 많지 않고 조회 수 역시 높지 않음.

- A 위원: ●●●●● 홈으로 이동하여 심의대상 채널과 유사한 성격의 채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의 저작물 이용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권리자에게 수익을 분배한다는 사실 자체는 동일함. 그러나 ●●●●●의 경우 □□□의 ♤♤♤와 같은 저작물 식별 기술을 통하여 개별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제휴 계약을 맺은 신탁관리단체의 관리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포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사유는?

- 강나래 전문위원: ●●●●●가 신탁관리단체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르고 불법복제물의 전송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임.

- B 위원: 광고가 붙어 있는 경우 광고 수익은 □□□와 같은 방식으로 배분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배분의 대상이 채널 운영자인지, 권리자인지 혹은 일정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 강나래 전문위원: ●●●●●의 공지 중 저작물 이용,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은 신탁관리단체와의 제휴 계약 사실 자체에 대한 내용이 전부임.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었음.

- B 위원: □□□는 권리자 또는 신탁관리단체와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되어 있음. □□□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 기술을 통해 저작물 등록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알리고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A 위원: 신탁관리단체와의 제휴 계약 체결 당시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 배분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정하였을 것임.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공개하기 어려울 수 있음.

- B 위원: ●●●●● 측의 저작물 이용 관련 안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됨. 실제 채널 운영자의 대부분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큼. 시정권고와 같은 행정조치도 좋지만 이용허락이 있다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낼 필요도 있음.

- C 위원: 개인이 사적으로 올린 저작물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공공기관이 아닌 권리자가 직접 나서서 추적하고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임.

- D 위원: 같은 의견임. 권리자가 직접 추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이의 없음.

- B 위원: 이용자들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보호하자는 취지임. 검토보고서의 내용에는 동의함.

- A, C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7번에 대하여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다음 안건은 순번 8번부터 535번까지 634건의 모니터링 안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소프트웨어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저작물 유형별로 대표 안건을 하나씩 보고드리겠음.
  (음악 'Blueming'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1번은 웹하드에서 제공 중인 불법복제물로, 1980년대부터 2021년까지 연간 100위 곡을 압축 파일로 묶어 판매 중인 사안임. 약 1기가 분량의 압축파일은 100 포인트에 판매 중임.
  (방송 '아케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07번은 2021. 11. 7.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1천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SW 'Adobe illustrator CC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46번은 윈도우 운영체제인 '윈도우 10'을 판매하면서 한글, MS 오피스 및 어도비 사의 프로그램들을 함께 판매 중인 사안임.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8

번~535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번~53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6967호~6973호(순번 1번~7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6974호~7501호(순번 8번~53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510호~7073호(순번 1번~1564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3.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3. 7.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